
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구 분	내 역					
출장자	소속	해양연구본부	성명	김 민	직급	전문연구원
출장목적 (중복선택 가능)	☐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☐ 국제행사 주최 ☐ 국제행사 참가 ☐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☒ 세미나, 교육, 훈련 ☐ 기타 ()					
	○ 출장목적 : 로도스 해양법 아카데미(Rhodes Academy) 참석					
관련사업 (예산항목)	- (일반) (2025) 독도·해양법 연구센터 운영 (사업기간 : 2025.01.01. ~ 2025.12.31.)					
출장기간	2025.6.21(토) ~ 2025.7.13.(일) (22박 23일)				출장지	그리스 (로도스)
출장일정	일자	방문지	주요업무*			항공편
	6.21(토)	부산(08:05) → 인천(09:10) → 취리히(17:30)	항공 이동			KE1404 KE917
	6.22(일)	취리히(15:35) → 로도스 (19:35)	항공이동 및 로도스아카데미 리셉션 참석			LX8346
	6.23(월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영해 및 접속수역, 해협 및 군도수역 레짐, 유엔해양법협약 역사 및 개요 수업 참석 오후 : 아이스 브레이커 리셉션 참석			
	6.24(화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터키해협의 법적 레짐, EEZ 레짐, 대 륙붕 레짐 수업 참석 오후 : 항행 워크숍 참석			
	6.25(수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대륙붕, 기후변화 수업 참석 오후 :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			-
	6.26(목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해양과학조사, 환경법 수업 참석 오후 : 해양과학 워크숍 참석			
	6.27(금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교섭절차, 심해저, 분쟁해결 수업 참석 오후 :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			
	6.28(토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린도스 현장학습			
	6.29(일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			

	6.30(월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대륙붕의 외측한계선, 영해기선, 해양 경계획정 수업 참석 오후 :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	
	7.1(화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해양경계획정과 섬, 분쟁지역에서의 활동, 경계획정 워크숍 개요 수업 참석 오후 : 해양경계획정 워크숍 참석	
	7.2(수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지중해 경계획정, 인류공동유산, EEZ 어업 수업 참석 오후 :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	
	7.3(목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공해어업, BBNJ, 중앙북극해 어업 수 업 참석 오후 : 생물자원 워크숍 참석	
	7.4(금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해저케이블과 파이프라인, 대체 에너 지 자원, 항만국 통제와 관할권 수업 참석 오후 : 필기 시험 참석	
	7.5(토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시미 섬 현장학습 오후 :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	
	7.6(일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	
	7.7(월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국제소송, 분쟁해결절차, 유엔해양법 협약, IMO, 해양환경 수업 참석 오후 :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	
	7.8(화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심해저 개발, ITLOS 심해저 분쟁 관 할권, BBNJ 교섭 수업 참석 오후 : 주권국 소송 특별 강의 참석	
	7.9(수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공해 환경보호, IMO의 해양환경 보 호, 국제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수업 참석 오후 : 해양환경보호 특별 강의 참석	
	7.10(목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기후변화 및 해양거버넌스, 심해저 개발과 분쟁해결절차, 칠레의 MPA 설치 수 업 참석 오후 :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	
	7.11(금)	2025년 로도스 아카데미 (Mediterranean Hotel)	오전 : 구술시험 응시 오후 : 졸업식 참석	
	7.12(토)	로도스(12:50)→ 파리(15:45)→ 인천(+1, 15:30)	항공 이동	AF1261 KE902
	7.13(일)	인천(17:10) → 부산(18:20)	항공 이동	KE1405

○ 출장목적 달성 정도

- 해양법 전반에 대한 이론적·실무적 지식 함양 및 글로벌 해양법 전문가와의 네트워킹
- 로도스 해양법아카데미 참석을 통해 해양법 전문성 강화라는 출장목적 달성함

○ 주요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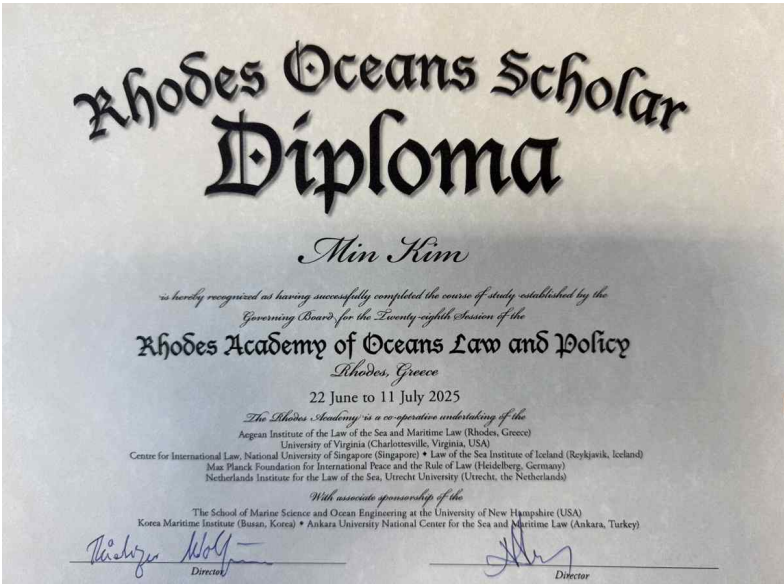
- (해양법 교육 수료 및 이론·실무 능력 강화) 해양경계획정, 해양과학조사, 해저케이블 등 해양법 현안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고 이를 심화 발전시킨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해양법 전반에 관한 지식과 역량을 제고하였으며, 서면시험 및 구술시험을 통과하여 로도스 아카데미 수료요건을 충족함
- (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KMI 위상 제고) ITLOS 재판관, 국제기구 관계자, 각국 외교관, 학계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연구 및 협력 기반 마련. 여수아카데미 졸업생들과의 회의 및 여수아카데미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KMI의 위상 제고
- (해양법 현안 대응능력 강화 및 연구기반 확보) 중첩수역에서 해저케이블 설치 문제, 중첩수역에서 해양보호구역 공동지정,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해양법 공백 등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해양법 관련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 해양규범 연구 기초 자료 확보

<붙임 1> 강의 및 워크숍 진행 사진



<붙임 2> 졸업식 사진



	<붙임 3> 수료증(Diploma) 
향후계획	○ 출장 성과 공유 계획 - 로도스 아카데미 강의 및 인적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연구과제 제안 - 여수아카데미 운영 개선을 위한 참가자 의견 교류 및 로도스 아카데미 사례 공유 ○ 정책화 등 활용 계획 - 분쟁수역에서 해저케이블 설치·운영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, 해양과학조사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쟁점, 재생에너지 확대에 인한 법적 쟁점, 분쟁수역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, 무인 잠수정, AI 기술 등 과학기술의 해양 적용 확대에 따른 해양법적 대응 방안과 관련된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차년도 내부 과제 제안에 활용 예정 - 특히, 한중, 한일 EEZ 해양보호구역 공동 지정 가능성,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의 해저 케이블 분쟁 가능성, 영국 도거뱅크 및 네덜란드 해상풍력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을 중점으로 한 사전 연구를 진행할 계획
참고 등 특이사항 (건의사항)	없음

*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), 결과(√))

업무유형	☐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☐ 국제행사 주최 ☐ 국제행사 참가 ☐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☒ 세미나, 교육, 훈련 ☐ 기타 ()
업무	6.23.(월) 아카데미 수업 및 리셉션 참석
수행계획	☐ (오전) 수업 참석 - 일 시 : 6.23(월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해양법 역사 및 개관, 영해 및 접속수역, EEZ 제도 ☐ (오후) 아이스브레이커 리셉션 참석 - 일 시 : 6.23(월) 15:30 ~ 18:30 - 수업내용 : 아이스 브레이크 리셉션
수행결과	☐ (제1차) 해양법 역사 및 개관 - 1930년 헤이그 회의, UNCLOS 제1-3차 회의를 거쳐 1982년 UNCLOS 채택 - UNCLOS는 150여개 국가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권한을 부여하였으며, 패키지 딜 접근방식, 컨센서스 기반의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였다는데 특징이 있음 ☐ (제2차) 영해 및 접속수역 - 영해 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설정하며,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나 무해통항권에 의해 제한 - 접속수역은 영해 외측 12해리까지 설정가능하며, 연안국이 명시적으로 선포해야 함 ☐ (제3차) EEZ 제도 -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가능하며, 해수면, 수중, 해저, 하층토, 상공을 포함하는 3차원적 개념임. UNCLOS에서 새롭게 도입된 최신 해양수역 개념 - EEZ는 영해도 공해도 아닌 그 자체로 특별한 법적 지위 보유. 해양자원의 1/3이 EEZ 내에 위치
업무	6.24.(화) 아카데미 수업 및 워크숍 참석
수행계획	☐ (오전) 수업 참석 - 일 시 : 6.24(화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항행 : 해협 및 군도수역, 터키해협의 법체제, 대륙붕의 과학적 측면 ☐ (오후) 워크숍 참석 - 일 시 : 6.24(화) 15:30 ~ 18:30 - 수업내용 : 항행 워크숍
수행결과	☐ (제4차) 항행: 해협 및 군도수역 - 국제해양법상 해협은 협약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지만, 지리적으로 두 육지 사이의 좁은 수로를 의미.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기능적 요소가 중요 - 군도국가는 전체 또는 일부가 군도로 구성된 국가로 군도수역에서 무해통항권과 군도통항권이 보장됨 ☐ (제5차) 터키해협의 법체제 - 터키해협은 몬트뢰 협약을 중심으로 통행이 규제되며, 흑해 연안국과 비연국간 차등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음 - 예컨대 군함의 통항의 사전 통보 기간, 체류기간, 총 톤수 제한 등의 차등을 두고 있음 ☐ (제6차) 대륙붕의 과학적 측면 - 대륙붕 외측 한계 설정을 위하여 Hedberg Line, Gardiner Line 두가지 공식이 존재 - 기술적으로 foot of slope 결정의 어려움, 해저 지형 데이터 수집 및 해석의 복잡성, 해저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), 결과(√))

	산맥과 해저고지의 구분 문제가 기술적 도전과제임
업무	6.25(수) 아카데미 수업 및 복습
수행계획	□ (오전) 수업 참석 - 일 시 : 6.25(수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대륙붕 레짐, 해양 매핑, 해양과 기후변화
수행결과	□ (오후)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 □ (제7차) 대륙붕 제도 - 대륙붕 제도에서 지질학적 구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, 법률가들은 지질학적 용어와 다르게 전체 대륙주변부를 대륙붕으로 통칭. 따라서 지질학적 대륙붕과 법적 대륙붕의 개념 차이 존재 - 대륙붕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, 별도 선언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임 (ipso facto) □ (제8차) 해양 매핑 - 초기에는 납줄을 이용한 수심을 측정하여 해양을 매핑하였으나 최근에는 멀티빔 소나 기술을 이용하여 넓은 범위, 높은 해상도로 상세한 해저지형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음 - 2017년 기준 전체 해양의 6% 매핑이 완료되었으며, 2025년까지 27.3% 매핑 목표 달성 예정되어 있음 □ (제9차) 해양과 기후변화 - 최근 자연적 냉각주기에 반하여 지속적인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인위적 CO2 증가가 온도 상승의 주원인임이 입증됨 - 해양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의 대응 방안으로 완화(Mitigation), 적응(Adaptation), 철분 시비 등 지구공학적 해결책을 들 수 있음
업무	6.26(목) 아카데미 수업 및 워크숍 참석
수행계획	□ (오전) 수업 참석 - 일 시 : 6.26(목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해양과학조사, 환경법, 공해 제도
수행결과	□ (오후) 항행 워크숍 참석 - 일 시 : 6.26(목) 15:30 ~ 18:30 - 수업내용 : 항행 관련 사례 연구 □ (제10차) 해양과학조사 제도 - 해양과학조사는 순수과학조사와 응용과학조사로 구분되며, UNCLOS에서는 조사국의 권리와 연안국 권한간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 - UNCLOS는 영해, EEZ, 대륙붕 등 해역별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,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□ (제11차) 환경법 개관 - 국제환경법은 스톡홀름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환경규제 체제가 확립되었으며, UNCLOS에서도 환경보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음 - UNCLOS는 해양환경보호와 보전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오염원별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rules of reference를 통한 규제를 도모하고 있음 □ (제12차) 공해 제도 -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으로 공해 자유가 언급된 이래 그로티우스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), 결과(√))

	의 자유해론을 통하여 공해 자유 원칙이 확립됨 - 공해는 연안국 영해, 군도수역, EEZ를 제외한 해역으로 항행의 자유 등 일부 공해 자유는 EEZ에서도 적용
업무	6.27(금) 아카데미 수업
수행계획	□(오전) 수업 참석 - 일 시 : 6.27(금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UNCLOS 협상, 심해저 제도, 분쟁해결 개관 □ (오후) 아카데미 수업 및 복습
수행결과	□ (제13차) UNCLOS 협상 - 해양법회의는 5개 지역그룹 기반 조직으로 구성되어 3개의 주요 위원회가 운영됨 - 대부분의 실질적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고, 공식 기록 없이 진행되어 협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으며 컨센선스 도출을 목표로 한 협상 방식 채택 □ (제14차) 심해저 제도 - 심해저는 대륙붕 외측 한계 이원 해저 및 하층토를 지칭. 따라서 대륙붕 외측 한계의 설정에 따라 정확한 범위가 결정됨 - 심해저 주요 광물자원으로 망간단괴, 해저열수광장, 코발트 crust가 있으며, 현재는 탐사 단계만 진행 중이며 상업적 개발은 미실시 □ (제15차) 분쟁해결 개관 - 국가는 명시적 동의 없이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분쟁해결 조항은 관할권 동의 여부와 범위를 명시하는 중요 기능을 수행
업무	6.28 (토) 현장학습
수행계획	□(전일) 린도스 현장학습 - 일 시 : 6.28(토) 15:00 ~ 24:00
업무	6.30.(월) 아카데미 수업 및 복습
수행계획	□(오전) 수업 참석 - 일 시 : 6.30(월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대륙붕의 외측한계, 영해기선, 해양경계획정 □ (오후)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
수행결과	□ (제16차) 대륙붕 외측 한계 - 1945년 트루먼 선언으로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주장이 시작되었으며, 1958년 제네바 협약으로 대륙붕의 법적 지위가 명확화 됨 - 대륙붕 외측 한계는 foot of slope 확인이 기준이 되며, Hedberg 공식과 퇴적물 두께 공식이 적용됨. 최대 한계는 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또는 2500미터 등심선+100해리로 결정됨 □ (제17차) 영해 기선 - 기선은 영토주권의 법적 경계와 해양관할권의 시작점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, 관할수역 측정의 기준선 역할을 수행하므로 해양경계획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- 기선을 자연적 기선(통상기선, Reef baseline), 직선 기선으로 구분되며, 최근 기후변화로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), 결과(√))

	인한 기선 문제가 대두 □ (제18차) 해양경계획정 - 유엔해양법협약하에서 영해(제15조), EEZ(제74조), 대륙붕(제83조) 경계획정 관련 조항이 존재 - 해양경계획정은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이른바 3단계 방법론으로 획정되는 경향이 있음. 1단계로는 잠정적 중간선, 등거리선을 설정하고 2단계로는 관련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3단계로는 현저한 불균형이 없는지 최종 확인
업무	7.1.(화) 아카데미 수업 및 복습
수행계획	□ (오전) 수업 참석 - 일 시 : 7.1(화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해양경계획정과 섬, 분쟁지역에서의 활동, 경계획정 워크숍 개요 □ (오후) 워크숍 참석 - 일 시 : 7.1(화) 15:30 ~ 18:30 - 수업내용 : 해양경계획정 사례 연구
수행결과	□ (제19차) 경계획정에서 섬의 역할 -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되고, 육지로 구성되며, 물로 둘러싸여 있고 고조시에도 수면위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짐. 인공섬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, 암석 또한 인간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섬의 하위범주임 - 해양경계획정에서 섬은 full, partial, no effect를 가짐 □ (제20차) 분쟁수역에서의 활동 - 분쟁수역에서의 활동은 UNCLOS 제74조 제3항과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잠정약정 체결 의무와 최종합의 도달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의무를 가짐 - 잠정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최종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, 영구적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제한됨 □ (제21차) 경계획정 워크숍 개관 - 해양경계는 영구적 성격을 가지므로 신중한 협상이 필요하며 정치적 의지가 협상의 중요 요소 - 경계획정시 메카도르 도법의 한계와 왜곡의 이해가 필요하며 좌표는 반드시 측지기준계를 명시해야 하며, 최근에는 위성기술을 활용한 정밀한 경계선 설정이 가능함
업무	7.2.(수) 아카데미 수업 및 갈라디너 참석
수행계획	□ (오전) 수업 참석 - 일 시 : 7.2(수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지중해 경계획정, 인류공동유산, EEZ 어업 □ (오후) 갈라디너 참석
수행결과	□ (제22차) 지중해 경계획정 - 지중해 대부분 국가들은 12해리 영해를 설정하였으며, 그리스(6해리) 영국(지브롤터와 키프로스 기지 3해리) 등 예외가 존재. 접속수역과 고고학적 보호구역 설정 국가들도 존재 - 최근 지중해 연안국들의 EEZ 선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, 대부분 중간선 원칙에 기초한 경계획정이 포함되며, 자원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 □ (제23차) 인류공동유산 - 인류공동유산(CHM) 개념은 1957년 몰타 대사 아비드 파르도의 UN 총회 발언에서 비롯되며, 이를 통하여 심해저자원의 형평한 분배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칙이 수립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), 결과(√))

	- 심해저자원을 규율하는 국제해저기구(ISA)는 이사회, 총회, 법률기술위원회 등 주요 기관으로 구성되며,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 □ (제24차) EEZ 어업 - 국제어업법은 어업의 보존, 관리, 개발과 관련된 국제법의 한 분야로 어족자원의 분류와 관리 방식을 규정 - 최근 목표 어종의 남획, 비목표 어종의 혼획 문제, 해저 서식지 파괴, IUU 어업,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로 인한 영향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
업무	7.3.(목) 아카데미 수업 및 워크숍 참석
수행계획	□ (오전) 수업 참석 - 일 시 : 7.3(목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공해어업, BBNJ, 중앙북극해 어업
	□ (오후) 워크숍 참석 - 일 시 : 7.3(목) 15:30 ~ 18:30 - 수업내용 : 생물자원 관련 사례 연구
수행결과	□ (제25차) 공해어업 - 유엔공해어업협정(UNFSA)는 예방적 접근법과 생태계 접근법을 도입하고, RFMO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국의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- 이외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서비스 제공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항만국 조치협정(PSMA)와 IUU어업과 과잉어획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 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공해어업과 관련이 있음 □ (제26차) BBNJ - BBNJ 협정은 MGR의 이용과 이익공유체계, MPA 설정 메커니즘, EIA 절차,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주요 내용을 삼고 있음 - 향후 BBNJ 비당사국 지위 문제, 이익공유 세부 방안 구체화, 과학기술위원회 등 보조기관 구성, 분쟁해결절차 확립이 과제로 남아 있음 □ (제27차) 중앙북극해어업 - 중앙북극해어업협정(CAOFA)은 비어업수역에 대한 최초의 예방적 규제 조약으로 10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음 - 현재 상업적 어업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실시하였으며, 과학연구 및 모니터링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주민 권리와 지식의 광범위한 통합, 컨센서스 기반 의사 결정 체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
업무	7.4.(금) 아카데미 수업 참석 및 필기시험 응시
수행계획	□ (오전) 수업 참석 - 일 시 : 7.4(금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해저케이블과 파이프라인, 대체 에너지 자원, 항만국 통제와 관할권
	□ (오후) 필기시험
수행결과	□ (제28차) 해저케이블과 파이프라인 - 해저케이블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는 1884년 파리협약이 최초이며, 이후 UNCLOS 10개 조항에서 해저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규율 - 최근 의도적 케이블 손상, BBNJ 협정 관련 이슈, 심해저 개발과의 조정, Dark Fleet Ships로 인한 위험 증가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), 결과(√))

	□ (제29차) 대체 에너지 자원 - 기존 대형 석유, 가스 플랫폼, 파이프라인 중심에서 현재 케이블을 통한 전력 전송,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자원 사용이 전환되고 있음 - 특히 환경영향평가, 항해, 어업, 관광 등 타 해양활동과의 충돌 문제의 법적 규율 필요성이 증가 □ (제30차) 항만국 통제와 관할권 - 항만국 통제(Port State Control)는 해상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가 주요 목적이며, 행정적 조치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인 항만국 관할권과 차이가 있음
업무	7.5.(토) 시미 섬 현장학습 및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
수행계획	□ (전일) 시미섬 현장 학습 - 일 시 : 7.5(토) 9:00 ~ 19:30
업무	7.7.(월) 아카데미 수업 및 복습
수행계획	□ (오전) 수업 참석 - 일 시 : 7.7(월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국제소송, 분쟁해결절차, 유엔해양법협약, IMO, 해양환경 □ (오후)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
수행결과	□ (제31차) 국제소송 - 국제소송의 주요 목적은 승리가 아닌 분쟁해결에 있으며 격식있는 절차를 통하여 사건의 중요성 부각 - UNCLOS는 강제적 분쟁해결 체계를 제공하며, 당사자들의 유보가 불가능하나 ICJ, ITLOS,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등 다양한 재판소를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 □ (제32차) 분쟁해결절차 - UNCLOS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다중 선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, 강제적 메커니즘을 포함한 최초의 포괄적 국제법 체계임 □ (제33차) UNCLOS, IMO& 해양환경 - UNCLOS는 rules of reference를 통해 IMO 협약을 포함 - 선박기인 오염은 MARPOL 73/78DL 주요 협약으로 작용하며, 기국이 일차적 책임, 항만국이 이차적 책임을 보유. 연안국은 제한적 권한만 보유. 항만국 통제를 통해 검사와 규제 시행
업무	7.8.(화) 아카데미 수업 및 특별 강의 참석
수행계획	□ (오전) 수업 참석 - 일 시 : 7.8(화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IMO의 해양환경보호, ITLOS 해저분쟁재판부 관할권, 심해저 개발 □ (오후) 특별강의 - 일 시 : 7.8(화) 15:30 ~ 18:30 - 수업내용 : 주권국 소송
수행결과	□ (제34차) IMO의 해양환경보호 - IMO는 생태학적, 사회경제적, 과학적 이유로 특별민감해역(PSSA)을 지정하여 해양오염 방지를 도모 - BBNJ 협정에 따라 공해상 MPA 설정시 IMO와 새로운 협약 체제 간 권한 조정 필요성 대두 □ (제35차) ITLOS 해저분쟁재판부 관할권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), 결과(√))

	- 해저분쟁재판부는 1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ITLOS의 특별재판부로 세계 주요 법체계를 대표하고 지리적 안배를 고려하여 구성 - 해저분쟁재판부는 협약의 적합성 검토나 총회나 이사회의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관할권과 분쟁해결 관할권을 가짐 □ (제36차) 심해저 개발 - 심해저에는 군사적 가치가 있는 전략 자원이 충분하며 페루 연안에 구리 매장량은 전 세계 1년 수요를 충족 가능 - 현재 ISA에서는 광업규칙(Mining Code) 개발을 진행 중이며,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의 지속. 현재 37개국이 예방적 모라토리움 지지
업무	7.9.(수) 아카데미 수업 및 워크숍 참석
수행계획	□ (오전) 수업 참석 - 일 시 : 7.9(수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공해 환경보호, BBNJ 협상, ITLOS 권고적 의견
	□ (오후) 워크숍 - 일 시 : 7.9(수) 15:30 ~ 18:30 - 수업내용 : 공해 MPA 설정과 항행 관련 사례 연구
수행결과	□ (제37차) 공해 환경보호 - BBNJ 협정에서 규정한 ABMT는 기존의 어종별, 자원별 관리방식과 차별화된다는 특징이 있음 - 다만 기존 국제협약 및 기구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문제, 도덕적 가치 판단과 국제법 적용의 충돌 가능성, 지역별 가치관 차이로 인한 해석 문제 등이 존재 □ (제38차) BBNJ 협상 - BBNJ 협정은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 맞춘 세부 규정을 지양하고, 미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레임워크 성격의 협정으로 설계되었음 - 현재 준비위원회가 첫 당사국 총회 세부 규칙을 개발 중이며, 발효후 1년 내 첫 당사국 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, 완벽한 협정이 아닌 실행가능한 협정을 지향 □ (제39차) ITLOS 권고적 의견 - 국제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상당한 권위와 법적 효과를 가짐. 다만 재판소의 고유기능이 아니며 설립 문서에 근거가 필요 - ITLOS 권고적 의견의 대표적인 예로 최근 소도서국위원회가 요청한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들 수 있으며, 해당 권고적 의견에서 기후변화 과학과 해양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채택된 여러 국제협정과 IMO, ICAO, 몬트리올 의정서 등 관련 기구의 규범을 검토
업무	7.10.(목) 아카데미 수업 및 복습
수행계획	□ (오전) 수업 참석 - 일 시 : 7.10(목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기후변화 및 해양거버넌스, 심해저 개발과 분쟁해결절차, 해양보호구역
	□ (오후) 강의 내용 정리 및 복습
수행결과	□ (제40차) 기후변화 및 해양거버넌스 - 유엔 기후변화체제는 UNFCCC를 시작으로 교토의정서를 통해 파리협정에서 상향적 접근

주요 업무내용 (계획(), 결과(√))

	법과 국가결정기여(NDC)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옴 - 최근 국내법원과 국제법원에서 기후변화 소송이 증가하고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이 채택되고 있으며, 해양법과 기후변화법이 상호작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□ (제41차) 심해저 개발과 분쟁해결절차 - 심해저 분쟁해결절차는 복잡하고 공백이 많아 연구 가치가 높은 분야임 - UNCLOS 제187조는 심해저분쟁재판부의 관할권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, 제189조에서는 심해저 기구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- 최근 해양과학조사 관련 분쟁, 고고학적·역사적 유물 관련 분쟁, 해저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관련 분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□ (제42차) 해양보호구역 - 2030년까지 전세계 해양의 30%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목표이며, 해양보호구역을 규율하는 법체제로는 CCAMLR, OSPAR협약, 바르셀로나협약, 누메아 협약 등이 존재 - 해양보호구역은 Precautionary approach 적용, EIA, MSP 수립, 생태계 기반 접근법 채택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음
업무	7.11.(금) 구술시험 응시 및 졸업식 참석
수행계획	□ (오전) 구술시험 응시 - 일 시 : 7.11(금) 9:00 ~ 12:30 - 수업내용 : 구술시험 응시
	□ (오후) 졸업식 참석 - 일 시 : 7.11 (금) 20:00 ~ 23:00
수행결과	□ 구술시험 통과 후, 학위증 취득